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합534277, 2015가합557911(병합)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신용보증기금

2.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명주푸드

변론 종결2016. 4. 15.

판결 선고2016. 4.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74,471,074원 및 그 중 90,625,226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183,844,1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각 2015. 8.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6,195,574원 및 그 중 6,156,004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 주식회사 명주푸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120,510,875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7,073,9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명주푸드 주식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20,510,875원,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7,073,9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원고 기금	2014.9.18.	C	179,820,000원	2015.9.17.	국민은행	199,800,000원
원고 기금	2014.9.24.	D	90,000,000원	2015.9.23.	우리은행	100,000,000원
원고 재단	2011.6.22.	E	27,000,000원	2015.6.12.	국민은행	3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 A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들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 기금: 2012. 12. 1.부터 연 12%, 원고 재단: 2010. 12. 2.부터 연 14%),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는 2014. 12. 31. 폐업으로 대출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기금은 2015. 3. 13. 우리은행에게 91,146,722원, 2015. 5. 18. 국민은행에게 183,844,1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로부터 521,496원을 회수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위 대위변제금은 90,625,226원(= 91,146,722원 - 521,496원)이 남게 되었으며, 위 대위변제금 중 521,496원을 회수함으로써 1,74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원고 재단은 2015. 4. 10. 국민은행에게 6,156,0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으로 39,57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2011. 4.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명주푸드(이하 '피고 명주푸드'라 한다)는 2014. 11.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명주푸드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281,122,297원 중 88,502,022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4. 피고 명주푸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B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251,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피고 명주푸드에 대한 281,122,297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141,494,978원 상당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도 제3항 제2호)

피고 명주푸드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7호증, 갑가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 기금에게 274,471,074원(= 대위변제잔액 183,844,100원 + 대위변제잔액 90,625,226원 + 확정손해금 1,748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90,625,226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3. 13.부터, 대위변제잔액 183,844,1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5. 18.부터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8.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재단에게 6,195,574원(= 대위변제잔액 6,156,004원 + 법적절차비용 39,5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6,156,00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4. 10.부터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4.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명주푸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인 2014. 11. 13.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피고 A는 2014. 10. 23.부터 대출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4. 12. 31.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원고들이 신용보증 대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인 피고 명주푸드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피고 명주푸드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명주푸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명주푸드는, 피고 A에 대하여 1999. 9. 11.경부터 2014. 11. 5.까지 돼지 부분육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81,122,297원에 이른 상태에서 이를 보증한 피고 B으로부터 그 일부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 피고 명주푸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주푸드는 피고 A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한 사이로 피고 A 및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명주푸드는 피고 A가 대출은행에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양도받은 점, ③ 피고 명주푸드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 피고 A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피고 A, B의 갹생을 도모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악의추정을 뒤집고 피고 명주푸드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명주푸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주푸드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참조)¹⁾.

나)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말소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142,489,125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12. 1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63,0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가액은 120,510,875원(= 263,000,000원 - 142,489,125원)이 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은 그 원금만도 274,471,074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고, 원고 재단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금 6,195,57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6,156,004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15.까지 연 14%의 약정지연손해금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합계 7,073,943원(= 6,195,574원 + (6,156,004원 × 372일 / 365일 × 0.14))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 기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120,510,875원, 원고 재단에 대하여는 피보전채권액인 7,073,9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주푸드는 원고 기금에게 120,510,875원, 원고 재단에게 7,073,9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

판사이진용

판사한상술

별지

1) 이처럼 각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